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(안)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2. 29.

파 주 시 장



□ 사업내역

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규모
파주운정신도시3지구 A7블럭 (다올동 800번지 일원)	32,442㎡	5,797㎡	86,786㎡	아파트 8동(452세대) 및 부대시설 지하1층~지상18층

□ 안전점검비용(정기안전점검 52회, 초기점검 1회) : 금101,994,563원 (VAT제외)

□ 접수기간 : 2021. 12. 30.(목) 09:00 ~ 2022. 1. 5.(수) 18:00

※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, 파주시 주택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.

□ 수행기관 참가자격 및 지정 방법

- 『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』에 따라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.
-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(예비)순위자 별로 『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 기준 및 배점, 평가방법』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정함.

□ 제출서류

-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.
-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(실적, 평가결과, 가격제안서, 서약서) 1부.

※ 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,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,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.

3)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

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 : ‘붙임1’ 참조

주요공정계획 : ‘붙임4’ 참조

붙임 자료

- 1) 파주시 『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』 및 등록명부 1부.
- 2)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부.
- 3)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서식 1부.
- 4)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. 1부(별첨). 끝.

